일반 논문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이경용(Yi, Kyoung Yong)*

1. 머리말
2.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1) 조례 제정의 배경과 '업무재설계 검토회의' 구성
   2) 조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
3. 문화유산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1) 공동회의 결성과 주요 활동
   2) 재해 대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3) 디지털 아카이브 지향과 구축
4. 맺음말

* 한남대학교 사학과 조교수(kyyi27@hnu.kr).
■투고일: 2021년 06월 30일 ■최초심사일: 2021년 07월 09일 ■최종확정일: 2021년 07월 14일.
■기록학연구 69, 129-152,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9.129

www.kci.go.kr

〈초록〉

돗토리현 아카이브는「공문서관리법」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방아카이브, 아카이브의 사명과 역할, 돗토리현 아카이브, 문화유산기관 간 연계·협력

〈Abstract〉

Wit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newly enacted the "Records Management Ordinance"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evious archive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ordinance, which came into effect in April 2012, Tottori Prefecture expanded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Public Security Committee and Police Headquarters, etc.) A

www.kci.go.kr

series of archive systems were improved, such as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authority to appraisal and select.

In additi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went further and implemented the "Ordinance on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Documents, etc." from April 2017. Through this, the municipalities unit basic local government's record management support work was set as a unique function of the local archive, and a linkage and coope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for the preservation of private records of the prefecture area as well as the basic local area together with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and libraries.

As a reference case that continuously guarantees the performance of various activities based on the mission and vision of the local archives in Korea that aim for 'autonomy of records' on the poor archival culture soil,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case of continuous record management reform of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riginal role and function of the archive.

Keywords :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Mission and role of Archives, local Archives,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1. 머리말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했던 기록관리 개혁과 혁신 과정을 통해 지금의 공공기록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기를 거치면서 퇴행을 거듭하면서 '쭈그러진 아카이브'가 되었다(조민지, 이영남, 2017, 7-8). 현 정부 들어서서 진행된 기록관리 제도의 '퇴행' 현상을 타개하고 국가아카이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현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와 재구축을

www.kci.go.kr

전망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김익한, 2020, 22-23).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행정) 아카이브로부터 시민사회 아카이브의 분리·발전을 전제로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록공동체의 깊은 관심과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2000년을 전후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압축적 성장'은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줄곧 기록관리 전담부서가 형해화된 행정 환경이나[1] 여타 문화유산기관에 비해 낙후된 아카이브 문화 그리고 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공기록물법'이라는 '전가의 보도'에 기대서 행정 위계적 수행 방식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기형적인 '1인 기록관' 체제, 여전히 더디기만 한 지방아카이브 설치 등 많은 현안들이 계속 쌓여갈 뿐 제대로 된 해결방안 찾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의 '민간기록문화보존법' 문제를 둘러싼 기록공동체 내부의 '대응' 과정에서도 민간의 기록자료에 대한 국가아카이브의 인식과 지향이 행정기관 간 '관리 영역'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를 문화유산기관 간 역할분담이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이나 사명,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장기적 관점과 전망에 입각한 국가기록원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국가아카이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아카이브 설립과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 건립에 '고무되어' 지난 3년간 경쟁적으로 수행된 지방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보고서에서의 중심 논의는 '안타깝게도' 공공기록을 위한 기존 보존공간의 부족 현상 등 '시설적 측면'에 경사되어

1) 한국 국가기관들의 현용 기록 전담부서로서의 '문서과' 기능의 형식적 수행과 조직 편제라는 행정 구조에 대해, '문서과 없는' 기록관리-'기록관 없는'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기록관 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곽건홍, 2014, 128-134) 여전히 유의미하다.

www.kci.go.kr

있다(윤은하, 2021, 16-18).

아카이브의 '양적 확산'에 대한 우려는(이영남, 2019, 51) 지방아카이브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제기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아카이브의 사명이나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같은 기본적 '철학(이념)'이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유' 과정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점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민들의 지적 공유 재산을 보존·이용하는 '기록자치'의 체험 공간으로서의 지방아카이브 구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는「공문서관리법」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삼아 '기록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등 기록관리 제도상의 개혁을 이루었다. 곧 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까지 포함한 기록관리 대상의 확대, 현용-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기록관리, '영년' 보존기간 폐지와 모든 기록에 대한 아카이브의 평가선별 권한 강화, 현용단계에서의 부책관리부 공표 의무화 등이다(이경용, 2016, 406-409). 그런데,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표 1〉에서와 같이 지역적 관점에서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 실행을 위한 제도 개혁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돗토리현 아카이브가 '해당 지역의 유일한 기록관리 기관'으로,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의 기록관리는 물론 민간의 기록까지 포함한 '역사공문서등'의 폐기와 멸실 방지, '지역 공유재산'의 후대로의 인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였다.

〈표 1〉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관련 2가지 조례

조례명	주요 내용
돗토리현의 기록관리에 관한 조례(鳥取県の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条例) 제정(2011.10)과 시행(2012.4) (이하 '기록관리 조례')	· 「공문서관리법」의 '적정한' 기록관리 적용 ·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평가·선별 권한 강화

www.kci.go.kr

돗토리현에서 역사자료로써 중요한 공문서 등의 보존등에 관한 조례(鳥取県における歴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保存等に関する条例) 제정(2016.11)과 시행(2017.4) (이하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	·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시정촌 등 지원 업무 ·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이러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에 대해서는 「공문서관리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전개된 일본 지방아카이브에서의 '기록관리조례' 제정 활동이나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의미 등과 관련한 매우 한정적인 내용만이 소개되었다(이경용, 2019, 147-152).

이 글에서는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연속적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향이 기본적으로 기초자치체와 민간의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 고유의 업무(기능)로 설정하려는 데에 있었음에 착목하여,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보존조례 제정 이후 박물관, 도서관 등 현내 문화유산기관 간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활동 상황을 함께 정리, 소개한다.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 설립 이후 많은 광역자치체들이 지방아카이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는 지방아카이브 본연의 사회적 책무와 지향, '바람직한' 역할 수행과 관련한 일정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1) 조례 제정의 배경과 '업무재설계 검토회의' 구성

일본 지방의 행정구역 개편, 곧 '헤세(平成)의 대합병'(1999년~2006년)

www.kci.go.kr

과정에서 돗토리현내 기초자치체도 39곳에서 현재의 17곳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시정촌 공문서 보존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폐지 또는 합병으로 사라지는 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4년간 기록 현황을 조사하고 '역사공문서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으로 임의적 폐기와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상의 조언 등도 동시에 수행하였다(시미즈 타로, 2005, 61-92). 본래 돗토리현 아카이브 건립이 현사(県史) 편찬사업기구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이브 업무로써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수집과 보존, 이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2016년 2월 들어 이 지역의 격심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민간 기록을 포함, 역사공문서등의 산일을 염려한 현 의회에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해당 지역에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요구한 것은(타나카 겐이치, 2020)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2016년 2월 돗토리현 의회의 정례회에서 현정(県政)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요지는 '기초자치체의 합병 이후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시정촌 자치체를 '선도'해서 적절한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 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확고한 폴리시(policy)에 토대한' 아카이브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사의 답변이 이루어졌다(하야카와 카즈히로, 2018, 10). 곧 공문서관리법상의 취지와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을 반영해서 제정한 '기록관리 조례'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민간 기록을 포함한 기초자치체의 역사공문서등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아카이브의 업무상 권한과 사명 등을 명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6년 4월「돗토리현 아카이브 업무 재설계를 위한 검토회의(県立公文書館在り方検討会議)」(이하 '업무재설계 검토회의')가 구성된다.

업무재설계 검토회의는 법학 및 기록학 연구자 2명, 시정촌 직원 2

www.kci.go.kr

명, 현립도서관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의 위원과[2]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현 총무부, 현립박물관, 공문서관의 4명)으로[3] 구성되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당시 '좌장'으로 검토회의를 이끌었던 하야카와 카즈히로에 의하면, 시대구분과 기록자료의 성격에 따라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간 '분산 보존' 등 역할 분담을 해왔던 종래의 돗토리현에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검토회의에서의 논의가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등 현내 '문화유산기관'을 포괄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하야카와 카즈히로, 2018, 10-11).

업무재설계 검토회의는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재설계 방안 도출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5가지 검토사항을 「검토회의운영요강」에 명시하였다. 곧, 공공기록 외에도 관리해야 할 지역에서의 민간 기록 관리를 위한 자치체 기록관리기관 간의 역할, 현내 문화유산기관 간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지방아카이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업무기능' 등을 검토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 공문서등 관리 관련 지원을 포함한 현(아카이브)과 시정촌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에 관한 사항
- 공문서관이 보존·관리해야 할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범위(기본인식)에 관한 사항
- 현에서의 공문서관과 박물관·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에 관한 사항
- 공문서관이 보존·관리하는 자료의 바람직한 이용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공문서관의 바람직한 기능에 관한 사항

2) 행정법과 기록학을 전공하는 '학식경험자' 2명, 총무과장, 시정촌 총무과장, 현립도서관 향토자료과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3) 돗토리현 아카이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원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청의 기록관리 주무부국과 주무부서인 총무부장과 정책법무과장, 현립박물관학예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www.kci.go.kr

검토회의는 2016년 5월~9월 사이에 모두 4차례의 회의와 '기록관리 지역협의회'에서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일반 현민 대상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에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鳥取県立公文書館の役割・機能の在り方について)」(이하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장 2)에서 서술할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의 주요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보고서의 특징적인 핵심 내용만을 정리하도록 한다. 보고서에는 첫째, '각 자치체의 역사공문서등과 지역의 고문서등 원본은 각 자치체 또는 지역(민간단체와 개인)에서 보존'한다는 기록자치와 '현지보존 원칙'을 돗토리현 아카이브가 견지해야 할 해당 지역 역사공문서등의 수집 보존 활동에서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정책상의 '기본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체, 민간단체, 개인 등 각 주체들이 역사공문서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조례에 '보유주체의 책무'가 표현, 명기되는 이유이다.

둘째, 현내 유일한 아카이브로서 돗토리현 아카이브가 해당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기록관리 센터로서의' 역할, 곧 기초자치체 기록관리에 대한 아카이브 지원 업무를 '조례상에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실 돗토리현은 「공문서관리법」에서 규정한 '현용－비현용' 기록의 일관된 관리와 아카이브의 평가 선별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기록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종전의 아카이브 체제를 탈피했음에도 해당 지역 기초자치체에 대한 기록관리 지원 업무 기능은 조례상에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회의는 해당 지역의 '역사공문서등 보존관리체제 향상'을 위해 시정촌의 평가선별, 기록관리 연수 및 기술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일상적인 연계・협력 업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시정

www.kci.go.kr

촌 및 민간단체 · 개인 등의 보존(보관) 시설의 해체 및 대규모 재해 발생시를 상정한 적극적인 기록관리 업무 지원과 구체적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전보다 더욱 확대 · 강화된 해당 지역의 기관과 민간에 대한 기록관리 지원업무 기능을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업무로 조례상 명기'하도록 적극 제안한 것이다.

셋째, 검토회의는 해당 지역의 역사공문서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방아카이브 기능과 역할로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 간 '역할분담'을 포함한 연계 · 협력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유산기관에서의 '중복' 소장 기록 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용자의 편리성'을 적극 고려한 3관 연계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재해 발생시 기초자치체 등 지원 업무에 대한 3관의 역할분담과 연계 활동의 적극적 수행 등을 요청하였다.

2) 조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

검토회의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을 반영해서 2016년 10월 제정된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시에 1990년에 제정된 「돗토리현 아카이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鳥取県立公文書館の設置及び管理に関する条例)」(이하 '공문서관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 이는 돗토리현 아카이브가 '아카이브 시설과 (최소한의) 운영 기능'만을 규정한 '공문서관 설치 조례'가 상징하는 「공문서관법」(1987년 제정) 체제로부터 현용단계를 포함한 기록의 일관되고도 '적정한 기록관리'를 통제하는 「공문서관리법」(2009년 제정, 2011년 시행) 체제하의 지방아카이브로 변화 발전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아카이브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관리에 대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정책적 지향'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보다 적극

www.kci.go.kr

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4)]

그러면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지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존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자. 이 조례는 '총칙', '보유주체의 책무등',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3장,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과 '보유주체의 책무등'(1장~2장)에서 지방아카이브로서 지향해야 할 기록관리 사명과 정책 비젼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새로운' 아카이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실제 업무상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목적 : "역사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해서 역사공문서등을 보유하는 자(이하 '보유주체')의 책무 등을 밝힘으로써 역사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을 꾀하고..." (제1조)
- 기본이념 : "역사공문서등은 현민의 알 권리 보장에 바탕이 된다는 점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는 점 등 현재 및 장래의 현민 전체에게 가치 높은 지적 자원이기에, 각각의 보유주체가 적절하게 보존하고 이용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 시정촌 및 현민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장래 세대에 인계해야만 한다." (제3조)

곧, 목적과 기본이념을 통해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정책 지향이 아카이브가 보유한 '특정역사공문서등'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 전체'의 가치 높은 지적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이용 제공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조례 제2장 '보유주체의 책무등'(제5조~제9조)에서

4) 이러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일본의 기록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향했던 아카이브 제도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아카이브 역사상 매우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고 매우 높게 평가한다(시바타 토모아키, 2018, 50).

www.kci.go.kr

각 주체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역사적공문서등 보존조례'에서의 '보존주체' 책무 내용

주체	책무 내용
현	· 현(행정기관, 지방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적절한 보존과 이용 (제5조의 1) ·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체와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역사공문서등의 보존과 이용과 관련한 협력(지원) 활동(제5조의 1과 2) · 재해 발생시 또는 역사공문서등의 멸실·파손 우려시 각 보유주체, 기타 관계자와 연계·협력 통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제8조)
시정촌	· 보유한 역사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해 적절한 조치 강구(제6조의 1) · 현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관한 활동(조치)과 현민등의 역사공문서등의 보존·이용에 대한 협력(제6조의 2)
현민등[5]	· 현 및 시정촌과 협력해서 보유하고 있는 역사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 노력과 문화적 활용을 위해 가능한 공개하도록 노력(제7조)

〈표 2〉에서와 같이 돗토리현 아카이브에 부여된 책무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기록관리 조례'에 명기된 공안위원회, 경찰본부 등 현청과 교육위원회 소속 행정기관들이 생산·취득한 역사공문서등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관리 책무이다. 둘째, 아카이브가 설치되지 않은 해당 지역 기초자치체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 활동과 민간 단체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보존과 이용 관련 지원 활동 책무이다. 셋째, 평상시의 기록관리 업무 지원과 구별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기록의 멸실과 파손이 우려되는, 곧 유사시에 역사공문서 등을 보유한 주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책무이다.[6]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는 돗토리현이 관할하는 행정기관만이 아니

5) '현민등'은 현민 및 현내 사무소가 있는 법인, 기타 단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현과 시정촌은 제외한다(보존조례 제2조의 2).

6)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유사시 해당지역 역사공문서등의 보유주체들에 대해 '일시적 보존장소 확보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다.

www.kci.go.kr

라 현이 소재하는 해당 지역의 역사공문서등을 보유하는 각 주체들에 대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지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과 '각 보유주체들에 대한 기록관리 책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런데, 〈표 2〉에서 확인한 보존조례상 명기된 '보존주체들'의 역사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책무는 검토회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록자치' 원칙에 토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검토회의에서는 역사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은 돗토리현 아카이브만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역사공문서등 보존주체인 시정촌과 현민(민간단체 · 개인)들 간의 협력 체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각 주체들의 책무도 함께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은 돗토리현 지역의 시정촌 단위 아카이브 설립을 전망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에 명시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핵심 업무 기능

설치 목적	· 공문서관은, 현, 시정촌 및 현민등이 상호 연계, 협력으로 추진하는 역사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제9조의 2).
수행 업무 (제10조)	·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 및 일반 이용에 제공 · 역사공문서등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연수 · 현의 시책, 기타 현정에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 역사공문서등의 보유주체에 대해, 그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전문적 정보의 제공, 기술적 조언, 기타 협력 · 이외에 공문서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앞에서 살펴본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책무 등에 이어서〈표 3〉에서와 같이 돗토리현 아

www.kci.go.kr

카이브가 수행할 핵심 업무 기능에 기초자치체 등 의 기록보유 주체에 대한 업무 지원 활동 등 업무를 명기함으로써 '기록자치' 원칙과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역할에 따른 업무 기능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 기록법령 체계상 지방공공단체의 아카이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7],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새롭게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체에 대한 다양한 기록관리 지원 업무 활동은 이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설치 목적'이자 '고유한 업무 기능'으로 설정된 것이다.

3. 문화유산기관 간 연계 · 협력 체계 구축

1) 공동회의 결성과 주요 활동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 시행과 함께 돗토리현립 아카이브는 시정촌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4월 '현시정촌 역사공문서등 보존활용 공동회의'(県市町村歴史公文書等保存活用共同会議)(이하 공동회의)를 결성하였다.

〈표 4〉 공동회의 결성 목적과 사업

목적	· 현과 시정촌, 현민이 보유하는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활용 추진에 대해, 현과 시정촌의 한층 더 강화된 연계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함
구성단체	· 현 및 모든 시정촌

7) 「공문서관리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공공단체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보유하는 기록의 적정한 관리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모든 지방공공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기록관리 주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www.kci.go.kr

사업	· 적절한 문서관리, 역사공문서등의 보존·이활용의 추진에 관한 현·시정촌 공동의 추진, 현민에 대한 보급 계발 · 재해시의 연계·협력에 관한 검토 · 회원상호의 제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소속부회	· 평가선별부회 / 현용문서부회

* 「현시정촌 역사공문서등 보존활용 공동회의 설치에 대해서」에서 발췌

공동회의는 발족한 이후 매해 1~2회의 연수회와 1~2회의 각 부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의 기록 관련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보존조례 제정·시행에 발맞추어 종전의 '연락협의회'를 새롭게 발족시키면서 '해당 지역 사회의 기록 현안을 함께' 해결해가겠다는 목적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그 '단체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와 같이, 공동회의에는 '현 및 모든 시정촌', 곧 돗토리현 아카이브와 해당 지역의 시정촌은 물론 현청의 현용기록관리 담당 주무부처(총무부장, 정책법무과), 도서관, 박물관 등의 이른바 현내 문화유산기관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돗토리현의, 특히 민간기록을 포함한 역사공문서등의 활용과 대규모 재해 상황에 대비한 해당 지역 기록자료의 보존 대책을 '현내 기관간－자치체 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해가는 체계의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는 후술하는 돗토리현 문화유산기간 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재난시 현－시정촌간 연계 협력체제 구축과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된다.

2) 재해 대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체 또는 주민 등을 기록 보유 주체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기록보존과 활용 책무를 명시한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를 제정하여,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www.kci.go.kr

지역까지 포괄하는 아카이브 업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2017년 종전의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재해(풍수해, 지진, 화재 등) 발생시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개인 등을 적극 지원하는 재해대책 프로그램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검토회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촌과의 연계·협력' 방안 중에서 일부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재해시등의 현립공문서관, 도서관, 박물관등의 시정촌과 연계·협력 실시계획(災害時等の県立公文書館, 図書館, 博物館等の市町村との連携·協力実施計画)」(이하 연계·협력 계획)은 풍수해, 지진, 화재 등의 재해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체나 주민들의 기록 '구제' 요청이나 그 반대로 현에서 지역의 기초자치체로의 요청시, 그리고 시정촌 및 주민들의 요청이 없어도 돗토리현 아카이브를 포함한 현 문화유산 기관들의 '지원 필요' 판단에 따라 실행된다. 이러한 연계·협력 계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돗토리현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문화재과, 도서관, 박물관, 매장문화센터 등 현내 문화유산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시정촌 단위의 해당기관들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돗토리지역사연구회, 산인(山陰)[8]역사자료네트워크 등 민간 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표 5〉 돗토리현의 재해시 단계별 대응

단계(상황) 구분	대책 활동	비고
재해발생 직후	· 피해지역의 기록피해 상황 등 정보의 수집과 공유	· '정보공유전자회의실'
지원요청 직후	· 피해지역의 기록피해상황 조사 및 지원방침 결정	

8) 산인(山陰)지역은 일본 주고쿠(中国) 지방에서 동해에 접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돗토리현과 시마네현을 지칭한다.

www.kci.go.kr

지원활동 실시	· 피해 최소화 및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과 지원, 보관 장소 확보, 응급조치용 자재·기재 제공	· 기록의 긴급피난시설 일람 사전 준비
지원활동 종식후	· 응급조치 및 긴급피난 기록의 시정촌 등 반환 원칙	

* 「재해시등의 현립공문서관, 도서관, 박물관등의 시정촌과 연계·협력 실시계획」에서 발췌

재해에 대비한 연계 · 협력 계획은 크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과 평시 대응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5〉는 대규모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의 발생 상황이나 단계에 따라 '현내 문화유산기관－시정촌 단위 문화유산기관간' 연계 · 협력을 전제로 상호 역할분담 등을 통한 활동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9]

그런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기록 구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대응 태세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 · 협력 활동에서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곧 문화유산기관 간 지원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나 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연락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원활동 체제의 정비, 재해 당한 기록의 긴급피난처(시설) 리스트 정비와 공유, 잠재적 지원 대상의 기록일람표 정비와 공유, 지진피해의 경감조치 및 지원활동 물품의 정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평상시의 주요 대응 활동을 주관한다. 2017년~2018년의 공동회의의 연수회에서 보존복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록자료의 재해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수복 조치 등에 대한 실습을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을 연달아 개최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계획은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의 네 가

9) 구체적으로는 돗토리현 아카이브(연계: 정책법무과)－시정촌문서주관과, 현립도서관－시정촌립도서관, 현 문화재과 · 매장문화센터 · 현립박물관－시정촌립박물관 · 시정촌교육위원회 간 상호 지원, 민간단체 및 개인의 지원요청에 대한 돗토리현아카이브, 현립도서관, 현립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체계이다.

www.kci.go.kr

지 측면을 포함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내의 문화유산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송정숙, 2018, 290-294). 돗토리현은 1943년의 '돗토리 대지진', 2000년의 '돗토리현 서부 지진', 그리고 2016년 10월 21일에 발생한 '돗토리현 중부지진' 등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문화유산기관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들의 수행 역할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2019년부터 현사편찬사업으로 수집된 지진기록을 포함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재해 데이터'의 광범위한 조사·수집·정리를 통해 '재해 아카이브'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covid 19' 재해 상황에서 1918~1920년 돗토리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독감'에 대한 돗토리현립 도서관 소장의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해당 기사의 제목과 요약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3) 디지털 아카이브 지향과 구축

돗토리현에서의 문화유산기관 간 연계·협력은 비단 재해에 대비한 기록 구제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검토회의 보고서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의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기능'를 실현하기 위한 현내 문화유산기관 간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안하였다. 문화유산기관들의 소장 기록자료에 대한 목록정보 공유는 물론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면 '가능한 기록자료'부터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기관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제한적인 기록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영국 등에서는 영구기록에 대한 '지정보존소'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어서,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지방법원의 기록, 지역

www.kci.go.kr

의료보험 관련 기록, 지방 교도소 기록, 지방 산하기관과 위원회 기록 등은 지방 아카이브에서 보존하며, 일부 국방부 기록은 제국전쟁 박물관에서 보존한다(최재희, 2015, 34-35). 우리에 비하면 '기록(또는 문서)은 메이지 시기까지는 박물관, 그 이후의 것은 아카이브, 유물은 박물관, 도서(또는 서적)는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일본에서도[10] '이용자 관점'에 입각한 문화유산기관 간의 '바람직한 (기록관리)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검토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현상을 비판하면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3관 연계에 의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그림 1〉 돗토리 디지털 컬렉션 화면



* https://digital-collection.pref.tottori.lg.jp에서 화면 캡처

2021년 3월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홈페이지에 '돗토리 디지털 컬렉션'

10) 일본 최초의 아카이브인 야마구치문서관은 당시 야마구치현립 도서관장이었던 스즈키 마사치(鈴木 賢祐)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도서관은 도서자료를 수장·이용하는 문화기관으로 '비도서자료'의 정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아카이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아오야마 히데유키, 1996, 243-244).

www.kci.go.kr

을 공개하였다. 이 컬렉션은 돗토리현 아카이브, 돗토리현 매장문화재 센터, 돗토리현립도서관, 돗토리현립박물관 등의 4개 기관의 소장 자료 중 디지털화된 기록, 사진 등이 제공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모든 기관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 또는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 유형별로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돗토리 지역에 대한 '지식 거점'을 표방하는 이 컬렉션은 2024년에 돗토리현립미술관의 소장 자료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4. 맺음말

일본 「공문서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역사공문서등'은 '역사자료로써 중요한 공문서와 기타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행정기관이나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생산·보유하는 기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곧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생산·보유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국내의 모든 기록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이러한 법적 취지에 토대해서, 지방아카이브가 관할 지역 내의 기록만이 아니라 관할 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공공·민간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지방공공단체로서 특색 있는 조례'의 제정을 적극 권고하였고(지방공공단체 공문서관리조례연구회 보고서, 2011, 28-29),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실현한 '유일한 곳'이 바로 돗토리현 아카이브이다.[11]

돗토리현 아카이브가 '실현하고 있는' 시정촌에 대한 적극적인 기록관리 지원 업무 확대와 추진, 그리고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통해 지금 당장 우리 기록공동체가 진지하

11) 당시 지방공공단체 공문서관리조례 연구회의 좌장이었던 하야카와 카즈히로의 이와 같은 법률적 해석과 의지가 2016년의 검토회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게 고민해야 할 점을 제언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자치' 관점에서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역할 등 기록공동체와 아카이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에(지방자치법 제28조)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곧 '공공기록'을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보유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국한시키고 그 관리 범위 안에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만을 '곁가지'로 포함시키고 있는 현재 법령 하에서는, 국가아카이브가 '공공적' 가치를 지닌 민간의 다양한 시민기록에 대해 바람직한 '기록 정책'을 구상하고 이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기록원과 경상남도기록원은 각기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기록 수집'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민기록 수집이나 해당 지역을 표상하는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12] 그러나 해당 지역의 여타 기초자치체 등과 민간 영역의 다양한 기록화 사업에 대한 협업적 추진이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기초자치체나 민간의 다양한 아카이브 설치를 정책적으로 전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제 '자율 · 분권 · 연대'를 지향하는 '기록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법령 체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그리고 근원적 관점에 입각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 중심의 정책이나 문화에 길들여진, 게다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들의 역사나 연원이 아카이브 기관보다 오래되고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국가기록관리 체제가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역할 수행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2) 특히 서울기록원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연대와 협력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민네트워크 및 지방기록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표방하면서 'true local Archives'를 지향하고 있다(조영삼, 2019).

www.kci.go.kr

둘째, 협애한 기록공동체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기 추진된 기록혁신은 결과적으로 '관료주의에 포섭'되어 일부 '시스템 혁신'에 그쳤고(곽건홍, 2014, 31-50), 그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퇴행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보존연한이 종료되어 폐기 예정된 기록의 목록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표'한다. 우리는 '대상기록물 목록 공표'가 '선택사항'이다(국가기록원, 2012; 2014). 공공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대상 기록목록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절차는 기록관에서도 국가기록원에서도 실행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간 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 체제하 기록관리직 중심의 우리 기록공동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록관리 '수준'이다.

일부 소장 컬렉션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문화유산기관들의 경쟁적 '아카이브' 구축 환경에서 기록전문직으로 한정된 기록공동체의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계형 아카이브'의 지향과 실현 관점에서(이연창, 2021, 32-33), 돗토리현내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에 의해 구현된 디지털 아카이브는 '연합형 모델'에 해당된다. 문화유산기관들이 지금까지의 '독자적' 발전 전망을 폐기하고 공동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곽건홍, 2013, 28-31)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간 또는 문화유산기관 간 프로젝트의 공동추진은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 국가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공동의 업무 추진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예속된' 소속기관들의 한계를 '함께' 극복하려는 기록공동체로의 통합적 모색 또한 전망할 수 있다.

국가아카이브 차원에서는 공공영역–시민영역 간 협력이나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 지방아카이브 차원에서는 광역–기초–교육청 간 협력 등이 아카이브 고유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www.kci.go.kr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설치된 이후의 '운영'과 '실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편의적 발상과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기록평가에서 기록을 생산하는 업무기능에 대한 분석과 그에 토대한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처럼 아카이브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전적' 논의와 다양한 기록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건홍 (2013). 문화유산기관의 발전전략 비교 연구. 기록학연구, 36, 3-33.

곽건홍 (2014). 관료주의에 포섭된 기록관리 혁신.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서울: 선인출판사, 31-50.

곽건홍 (2014). 책임지는 정부를 위한 공공기관 재설계.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서울: 선인출판사, 128-134.

국가기록원 (2012). NAK 5-2:2012(v1.1),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1).

국가기록원 (2014).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 기록관용(v2.2).

김익한 (2020).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자료집: 코로나시대 기록관리의 변화와 과제, 22-23.

타나카 겐이치(田中健一) (2020). 二つの条例により県や地域の活動を未来へつなぐ : 開館30周年を迎えた鳥取県立公文書館の取組. アーカイブズ, 78.

손동유 (2021).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모색. 한국기록학회 2021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민간아카이브활성화, 5-12.

송정숙 (2018). 기록의 보존.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은글터, 263-303.

시미즈 타로(清水太郎) (2005). 鳥取県における市町村公文書管理の現象と課題 : 市町村公文書保存支援事業から. 鳥取県立公文書館紀要 창간호, 1-32.

시바타 토모아키(柴田知彰). 「鳥取県歴史公文書等保存条例」の戦後アーカイブズ発達史における位置. 鳥取県立公文書館紀要, 9, 39-56.

아오야마 히데유키(青山英幸) (1996). 日本におけるアーカイブズの認識と「史料館」·「文書館」の設置. 안도 마사히토(安藤正人)·아오야마 히데유키(青山英幸) 편. 記録史料の管理と文書館. 홋카이도대학 도서간행회, 243-293.

www.kci.go.kr

윤은하 (2021). 민간기록과 아카이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2021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민간아카이브활성화, 14-28.
이경용 (2016). 일본의 지방기록관리 연구 : 기록관리 조례 제정과 아카이브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0, 389-423.
이경용 (2019). 지방아카이브의 역할 : 일본 지역협의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9, 129-157.
이연창 (2021).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제안. 한국기록학회 2021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민간아카이브활성화, 30-39.
이영남 (2019). 기록의 자치성과 지방아카이브. 한국기록학회 2019년도 5월 월례발표회자료집.
조민지, 이영남 (2017). 민주주의 관점으로 본 국가기록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기록학연구, 53, 5-43.
조영삼 (2019). 서울기록원의 개원과 지방아카이브의 발전전망.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자료집(2019년 5월).
지방공공단체공문서관리조례연구회 (2011). 公文書管理条例の制定に向けてーより良い公文書等の管理を目指してー.
최재희 (2015). 기록물 평가 정책과 대량동종 기록물 선별 : 영국 TNA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인, 33, 26-39.
하야카와 카즈히로(早川和宏) (2018). 歷史的に重要な公文書・古文書の保存と理活用とは. 鳥取県立公文書館紀要, 9, 1-16.

〈참고 사이트〉(2021.6.20~6.30 수시 접속)

鳥取県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条例 : https://www.pref.tottori.lg.jp/secure/1166107/kobunsho_kanri_jourei.pdf
鳥取県における歷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保存等に関する条例 : https://www.pref.tottori.lg.jp/secure/1166107/rekishi_kobunsho_hozon.pdf
県立公文書館在り方検討会議報告書: 鳥取県立公文書館の役割・機能の在り方について: https://www.pref.tottori.lg.jp/secure/1048750/kobunsho-arikatakentou-report.pdf
돗토리현립공문서관,「災害時等の県立公文書館, 図書館, 博物館等の市町村との連携・協力実施計画の策定について」: https://www.pref.tottori.lg.jp/secure/771387/hokoku.pdf
돗토리현립공문서관,「災害時等の県立公文書館, 図書館, 博物館等の市町村との連携・協力実施計画」: https://www.pref.tottori.lg.jp/secure/771387/keikaku.pdf

www.kci.go.kr